

[한국민속촌 연간회원 이용약관]

(제1조) 목적

본 약관은 연간회원이 한국민속촌을 회원 자격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와 이용자 상호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제2조) 적용대상

본 약관은 한국민속촌을 방문하여 관람시설, 놀이시설,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연간회원에게 적용한다.

(제3조) 회원의 정의

- ① 한국민속촌 연간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 자격을 획득하여 회원증을 소지하고 가입 내용에 따라 한국민속촌 내 놀이시설, 관람시설,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용자를 말한다. 단, 별도로 규정된 일부 시설은 제외한다.
- ② 회원가입 후 회원의 종류 및 유효기간의 변경은 불가하다.

(제4조) 준수의무

한국민속촌에 내장하는 회원은 명랑하고 질서 있게 시설을 이용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(제5조) 회원의 가입 및 약관교부

-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 신청서에 회원의 신상 정보를 기입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회원으로 가입된다.
- ② 사업자는 한국민속촌 연간회원 가입신청을 승낙할 경우,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신청서(신청서에 약관 포함)를 교부하며, 가입비의 납부 후 회원증(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포함)을 이용자에게 교부한다.
-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가입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기재 사항 누락이나 변경내용의 미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, 사업자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.

(제6조) 회원의 권리

- ① 회원은 가입일로부터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 내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. 회원 종류 및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원가입 시 가입 내용에 의한다.
- ② 회원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. 단, 회원에게 제공되는 부가 혜택은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.

(제7조) 회원의 의무

- ① 회원은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 및 패용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제시 요구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만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. 회원증은 회원 본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이므로, 미 지참 시에는 회원 혜택을 이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인정·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회원은 혜택 이용 시 반드시 회원증 및 신분증을 직원에게 제시 후 선글라스, 마스크, 모자 등을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해야 한다.
- ③ 회원증은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으며, 적발 시 즉시 회원증은 회수되며 환불 및 재발급 되지 않는다.
- ④ 회원증은 양도, 매매가 인정되지 않으며, 회원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약관상 환불규정에 따른다.
- ⑤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. 이 때, 소정의 재발급 비용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⑥ 회원증 분실신고 이전에 회원 본인의 귀책사유(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)에 의한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진다.

(제8조) 회원 자격의 유효 기간

- ①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가입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의한다.
- ② 회원 가입 시 직접 방문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증 보관증을 발급하며, 회원자격의 유효기간은 회원증이 발급되는 날로부터 시작된다. 단, 보관증은 발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회원증으로 교환하여야 하며, 그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한다.

(제 9 조) 회원증의 재발급

- ① 회원증을 분실, 멸실,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회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분실, 멸실, 훼손신고서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. 단, 회원증의 일부 훼손 시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.
- ③ 회원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재발급 요청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회원증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④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원증을 분실, 멸실, 훼손한 경우 사업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회원증을 재발급 한다.

(제10조) 회원의 자격 상실
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.

- ① 회원권의 유효 약정기간이 만료한 경우
- ② 회원증을 임의로 부정사용(타인에게 양도, 매매, 대여 등)하다 적발된 경우
- ③ 회원의 귀책사유로 사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
- ④ 다른 이용자 및 회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등, 이용 중 행위 등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 및 회원의 혜택 이용에 지장을 주어 한국민속촌 방문 및 혜택 이용에 부적당하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

(제11조) 회원의 탈퇴 및 환불

- ① 회원가입 후 해외 이민이나 파견, 사망, 신체장애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시는 환불이 가능하다.
- ② 신용카드로 할부 구입한 경우 할부구입 후 7 일 이내에 서면으로, 방문사원 권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하며, 환불 금액은 각 구성원 일인당 한국민속촌 이용권 정상가격을 제하고 환불한다. 단, 상기 기간 내에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회원의 경우, 전액 환불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환불이 가능하다. 환불 후, 회원 자격은 즉시 상실되며 회원증은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 1.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구비
 2. 회원증을 부정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
 3. 1년 회원은 회원가입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
- ④ 환불금액 비율 기준

연간회원 (1년)		
비 고	기 간	환불금액
1	판매일로부터 2개월 이내	판매금의 50% 환불
2	판매일로부터 4개월 이내	판매금의 20% 환불
3	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	판매금의 10% 환불

(제 12 조) 손해배상

사업자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에게 신체상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.

(제 13 조) 면책조항

-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, 행정관청의 규제, 긴급한 안전조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원 혜택의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.

- ② 제①항의 경우에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회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가입비 환불금액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회원이 제①항을 이유로 탈퇴하는 경우 사업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비를 환불하기로 한다.

(제 14 조) 공중질서의 유지

- ① 한국민속촌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은 공중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회원은 한국민속촌 내 놀이시설, 관람시설, 부대시설의 이용 중 타인의 안전을 해치거나 시설물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(제 15 조) 시설물의 훼손책임

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한국민속촌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.

(제 16 조) 기타 안전사고

회원은 한국민속촌 내 놀이시설, 관람시설, 부대시설의 이용 중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인접을 금하여야 하며, 안내문 경고 표시 등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위험한 장소에 진입하여 발생된 사고는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진다.

(제17조) 불조심 의무

- ① 한국민속촌 내장 시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한국민속촌 내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담뱃불 등을 주의하여 항상 불조심을 하여야 한다.

(제 18 조) 약관변경 및 분쟁조정

-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사업자의 영업환경의 변화 등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 다만, 약관의 변경 후 그 내용이 기존의 약관내용보다 회원에게 유리할 경우, 기존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② 본 약관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규정에 따른다.